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
및 지원 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사회건설위원회
전문위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경과

의안 제656호로 2025년 11월 7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‘쓰담 달리기’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생활형 환경운동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(안 제5조)
- 마. 쓰담 달리기 행사(안 제6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연환경보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5. 11. 7.~2025.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제정 배경 및 취지

- ‘1)플로깅(plogging)’은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,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생활운동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, 국내에는 2018년 이후 확산된 것으로 파악됨.
- 한편, 국립국어원은 ‘플로깅(plogging)’과 ‘줍깅(jupging)’의 순화어로 ‘쓰담 달리기’를 선정하였으며, 현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있음.

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자치단체	제 명
1	서울시	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
2	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
3	도봉구	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
4	양천구	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
5	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
6	광진구	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
7	은평구	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1) ‘플로깅(plogging)’은 이삭 등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‘Plocka upp’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‘Jogging’의 합성어.

- 쓰담 달리기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동시에 거리 환경개선, 환경보호 인식 제고 등 복합적 효과를 가져오는 활동으로,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운동으로서 의미가 큼.
- 이에 본 조례안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 구민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조례안의 골자인 ‘쓰담 달리기’의 개념을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, 행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안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는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, 목표 설정·프로그램 개발·재원 조달 등 주요 추진사항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.
- 안 제5조(사업의 추진 및 지원)는 구청장이 법인·단체 지원,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

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- 안 제6조(쓰담 달리기 행사)는 구청장이 직접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민간기관·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환경보전 인식 제고와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.
-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는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, 법인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.
- 안 제8조(포상)는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·기관·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,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걷기·뛰기와 같은 신체활동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환경정화활동인 쓰담 달리기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,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환경보호 의식을 함께 고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 -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쓰레기 투기 방지 등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환경정책기본법

제25조(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26조(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

자연환경보전법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6. 민간단체·사업자·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
8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